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1.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2. 국립 인천대학교 유담 씨 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3. 경기도교육청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 예산 부실 편성 등에 대한 감사
4. 선문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5. 전국 학생 수 상위 10개 예술고에 대한 운영실태 및 관리에 대한 감사
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실태 및 관리에 대한 감사

제안이유

1.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23년 7월 발생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가해 학생인 김 전 의전비서관 자녀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음. 당시 피해보다 처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학폭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23년 7월, 당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으로 비화됐음. 특히, 김승희 전 비서관과 김건희 씨가 23년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13차례 통화했는데 9번의 통화가 학폭위 직전 한 달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그 의혹은 더욱 짙어졌음.

그런데 25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학폭위의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이 드러났음.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학급 교체로 갔으면 좋겠어", "'쟤들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강제 전학 바로 밑에 단계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이상의 발언은 학폭위원장과 학폭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나눈 대화인데, 실제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강제전학보다 단 1점 낮은 15점으로 '학급교체'결정이 내려졌음. 이같은 사실로 인해 당시 학폭위 심의

위원들이 짜맞추기 심의로 봐주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고, 권력의 외압에 학폭위 결정이 좌지우지 된 것은 아닌지 규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또한, 권력의 외압에 의한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감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보고서에서 “점수를 맞췄다는 주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학폭위 녹음파일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폭 사건을 처리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승진한 바 있음

청소년기에 겪는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학폭위는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은 △학폭위의 짜맞추기, 축소 심사 △경기도교육청의 부실 감사 등 처리 과정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배경에 권력의 부당한 외압이 작용한 정황이 드러났음. 따라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학폭 사건을 심사하고 결정해야 할 학폭위가 권력의 영향에 휘둘려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임

2. 국립 인천대학교 유담 씨 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31)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음.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음.

유담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이었는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간 편차가 커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박사 학위를 마치고 두 달만에 교수로 임명돼 경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려대 경영전략실 75일 근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또,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36조'에 따라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채용 의혹을 더 키우고 있음.

여기에 더해 유담 씨가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이 쪼개기, 자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신고가 교육부에도 접수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음.

권력자 자녀의 채용 특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특혜 논란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임.

3. 경기도교육청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 예산 부실 편성 등에 대한 감사

경기도교육청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은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운전면허 취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해당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신규편성한 후, 사후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됐으며 유사 사업과의 중복 및 사업 타당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음

본 사업은 미성년자인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학교 밖 민간학원 위탁형 바우처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교사의 인솔 부재 등 집행 과정에서 학생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일부 지역에서 제기됐음

이에 철저한 감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함

4. 선문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정교 유착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가 설립한 선문대학교가, 2020년도부터 교육부의 LINC(산학연협력 선도대학)·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종교활동과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다

수 확인됨.

선문대학교는 신학과 학생을 통일교 계열 기관(천원사, 효정세계평화재단, 선학역사편찬원 등)에 현장실습 명목으로 파견하며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았고, 일본 기업 '피트서비스'를 통한 실습에서도 전공과 무관한 파견 및 형식적 서류 작성 등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아너스프로그램' 명목으로 신학과 해외선교 및 종교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부 예산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어, 국민 세금이 종교단체의 교세 확장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재정지원사업의 선정·교부 및 감독 과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실질적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선문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규모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1년 127억 원에서 24년 258억 원으로 확대된 만큼 그 선정 과정과 증액 경위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지원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결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함.

이에 선문대학교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운영 전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특히 일본 피트서비스 실습 및 해외 조직 자금과의 연관성), '아너스프로그램' 등 종교활동 관련 사업의 운영 적정성, 그리고 교

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선정 및 감독 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임.

5. 전국 학생 수 상위 10개 예술고에 대한 운영실태 및 관리에 대한 감사

부산브니엘고 학생 동반자살 사건 이후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전국 무용강습회, 사전모의 실기평가 실시, 대학교수의 불법과외, 학원강사의 겸임 및 레슨비 상납, 대학 주최 콩쿠르 인센티브 등 전반적인 입시비리 문제가 드러남.

특히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8월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교장과 특정 무용학원 간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학생들이 학원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 즉 학원과의 카르텔 형태가 나타난 것이 확인 되었음. 이러한 문제는 결국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학 주최 콩쿠르 및 입시제도 등에 대한 면밀한 추가 감사가 필요함.

이는 관계부처인 문체부(한예종 및 각종 예술협회)와 교육부(중등 및 고등교육기관)를 비롯하여 여러 협회와 교육기관이 모두 연관이 있음에도 서로 책임전가하는 모습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

요함. 이에 학생 수 상위 10위의 예술고의 운영실태 등을 학원, 대학 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면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임.

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실태 및 관리에 대한 감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허성우 이사장, 본부장(경영+사업 겸직), 적극 가담자(기조실장, 비서실 차장) 등 이사장 측근 조직이 인사권과 예산을 사유화하여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행위 및 직권남용 등,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용 비위 외부용역 조사 및 보복성 부당인사, ▲공문서 조작으로 이사장의 외유출장 및 허위 보고서 국회 제출, ▲임원복무규정 위반 등 근태문제,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혈세낭비 호텔행사 등 예산의 방만한 운영 등 복합적이고 조직적인 이사장 및 측근 조직의 비위 행위와 방만한 조직운영 등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기관의 공공성과 청렴도가 심각히 훼손되는 등 비정상적인 기관 운영 실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됨

① 허성우 이사장 및 본부장, 적극 가담자 등 이사장 측근 조직 등은 25.6.16. 정상적으로 발의된 「교육시설법」의 내용 및 발의절차 등을 문제 삼아 실무직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수차례 강요하고, 신혼여행

중인 직원에게까지 반복 제출을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 행위를 저지름. 또한, 경위서 제출 직후 해당 직원(개정안 제출 관련자) 및 갑질 피해자(신고인)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성' 인사(직위해제 포함 등)를 단행하는 등 명백한 갑질 행위를 자행하였음.

또한 인사근거 자료는 내부 규정상 준영구 보존대상임에도 원본 파쇄를 지시하였고, 이미 2023년에 폐지된 '지방 순환근무 제도'를 인사근거로 악용하는 등 명백한 직권남용을 저지름. 이는 「정관」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함.

아울러 보복성 인사 과정에서 「전결규정」과 「대외활동 관리지침」등 내부 운영규정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결재 체계가 무력화된 정황이 확인되어 기관 전반의 통제·감독 기능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됨.

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후, 갑질 피해 신고자 및 특정직원을 대상으로 대형 법무법인에 잇따라 '비위조사 및 징계검토용역'을 의뢰함. 기관은 이를 '노무이슈 대응', '법안발의 조사'로 위장했으나, 실제 용역 관련 내부문서에서는 '특정 직원의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 검토'로 명시되어 있음. 기관 내부의 감사실과 노조의 문제 제기에도 동일한 비위조사용역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조직적 은폐 행위이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을 위반한 위법행위임.

③ 25.8.30~9.3 핀란드 연수를 ‘현지 교육청 초청’으로 국회 등 외부에 보고했으나, 초청장·공문 모두 조작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관련 기간확인 등을 통해 허위사실임이 드러남. 현지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반타교육청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정을호의원실의 공식 질의에 대해 “공식 초청 사실이 없다”고 답변 했으며, 해당 연수는 반타교육청 공식행사도 아니었음. 그럼에도 허위 초청을 근거로 허성우 이사장의 출장비와 항공료 등 1,600만 원의 기관 운영비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허위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하는 등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위반 소지가 있음. 따라서 기관장이 집행한 모든 국내·외 출장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근거로 집행된 출장비 및 항공료 등의 허위·과다 지출 여부, ▲전임 이사장 대비 과도하게 지출된 숙박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적 지출에 대해서는 이사장 개인의 책임에 따라 기관에 전액 회수할 것을 요구함.

④ 2025년 8월 8일 개최된 창립기념식에서는 단 3시간에 약 7,413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행사비가 두 배 이상 과다 지출됨. 또한 최근 ‘갑질 은폐’와 관련해 법무법인 및 노무법인 용역비가 수의계약 형태로 반복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기관 워크숍 등에서도 예산 누수 사례가 다수 적발됨. 일부 건은 ‘보안 및 대외비 사항’을 이유로 정식 계약 요청 없이 문서 갈음으로 계약 체결한 사례도 확인

되어 재정 운영 및 지출 절차적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발함.

이는 기관 내부 결재 과정에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이사장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된 결과로써, 예산의 80% 이상이 교육청, 학교 등으로부터 모집되는 공적재원임에도 이사장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것임. 따라서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회복하고 공적 재원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⑤ 허성우 이사장은 「임원복무규정」제12조(1일 8시간, 09시~18시까지 주 40시간)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실제 근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전혀 없는 등 근태관리가 매우 부실함. 보관기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간 동안의 CCTV 분석결과, 출근 후 2~3시간 만에 퇴근하거나 장시간 외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근무 형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기관장의 일탈과 복무 태만이 확인됨.
또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부실 차량일지 작성, 관리미흡'을 이미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퇴근 외 목적이 불명확한 주행거리 약 2,100km가 확인됨.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3조 및 제26조 위반이며, 기관장으로서의 복무의무 및 근태부실, 청렴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비위 행위임.

이와 같은 반복된 일탈과 복무태만으로 인해 기관의 공공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기관 운영이 정상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책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성우 이사장의 임기 시작일부터 감사 실시일까지의 모든 근무일에 대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기록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관리자 및 책임자에 대한 문책, 유류비 회수 등을 포함하여 기관 운영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